

예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88호

학교시설사업(호명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예천 호명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650-251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8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 호명초등학교

2.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나. 성명 :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19,748m²

나. 사업시행면적 : 4,672m²

5.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2년 8월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 :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별첨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예천군 고시 제2020-41호 기준(2020.05.21.)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예천군 호명면 일원	2,082,054.8	—	2,082,054.8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업 지역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녹지 지역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 정	1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 지구	예천군 호명면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84	19,375	473,323.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1	6,038	129,644.2
일반 도로	계	57	17,611	453,643.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3	5,868	128,627.4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8	6,163	179,767.6	-	-	-	3	2,413	73,722.4	5	3,750	106,045.2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중로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 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55	주간선도로	2,7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3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76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3	4	28	보조간선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4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3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1	16	국지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2	16	국지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3	16	국지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4	16	국지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5	16	국지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 (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 (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1	32	10	특수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소로	1	33	10	특수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5-291 (2015. 9. 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자전 용도로		경고12-230 (2012. 7. 31)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230 (2012.7.31)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7,565.8	—	317,565.8		
소 계					198,052.5	—	198,052.5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28,246.9	—	128,246.9	경고12-230 (2012. 7. 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 7. 31)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 7. 31)	
소 계					110,872.3	—	110,872.3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6	9,672.9	—	9,672.9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3	5,653.8	—	5,653.8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3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5	4,724.5	—	4,724.5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4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8	4,419.8	—	4,419.8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5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7	8,393.5	—	8,393.5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6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9	8,055.2	—	8,055.2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7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0	58,408.5	—	58,408.5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8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9	5,238.4	—	5,238.4	경고12-230 (2012. 7. 31)	
기정	9	공원	수변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8	6,305.7	—	6,305.7	경고12-230 (2012. 7. 31)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 정	1	전기공급 설비	케이블 헤드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186.5	증) 4,672	40,858.5		
소 계					15,076.0	증) 4,672	19,748.0		
변경	1	학교	초등 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5,076.0	증) 4,672	19,748.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21,110.5		21,110.5		
기정	1	학교	고등 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21,110.5		21,110.5	경고12-230 (2012.7.31)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학교 (호명초등학교)	학교시설 변경 A = 15,076㎡ → 19,748㎡ 증)4,672㎡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확장에 따른 학교 면적 증가

마. 방재시설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	7	하천	지방	예천군	예천군 지보면	9.62	25~1	524,309	경고	송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정			하천	호명면 산합리 1510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 합류점	(2.37)	10 (38)	(90,188.8)	09-483 (2009.11. 5)	천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지구내 면적 중 하천7은 도로(3,224.6㎡) 포함

2)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2	3,102.8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2	13,390.7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2,537.9		
기정	1	하수도	오수 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2,537.9	경고12-230 (2012.7.31)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²)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3	302.3	
	3	1,229.5	1	308.0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308.9	
	6	973.8	1	324.2	
			2	324.1	
			3	325.5	
			7	2,598.9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7	324.5			
	8	323.2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4	321.8	
			5	325.2	
			6	324.6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 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 허)
D-2	1	3,118.6	1	310.2	
			2	309.8	
			3	310.0	
			4	309.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5	309.6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5	307.8	
			6	307.5	
			7	307.8	
			8	307.2	
	5	2,172.5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8	271.2	
	6	1,338.2	1	267.7	
			2	267.7	
			3	267.9	
			4	268.1	
			5	266.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8	920.0	1	306.1	
			2	306.0	
			3	307.9	
	9	2,596.5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11	933.3	1	312.2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6	323.3	
			7	323.5	
			8	3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14	2,564.5	1	319.1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16	1,488.0	1	298.9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기정	486,537.2	13필지	486,537.2	
		변경	481,865.2	12필지	481,865.2	
B-1	-	기정	86,809.3	1	15,370.1	제3종일 반주거 지역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 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
				2	28,207.0	
				3	31,232.2	
				4	12,000.0	
		변경	82,137.3	1	38,90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31,232.2	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은 제외한다.
			4	12,000.0	
B-2	-	88,447.7	1	46,020.2	
			2	42,427.5	
B-3	-	79,372.5	1	79,372.5	
B-4	-	59,903.4	1	34,252.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B-6	-	55,901.2	1	55,901.2	
B-8	-	89,567.6	1	48,917.3	
			2	40,650.3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 합병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근생1	-	1,521.5	1	485.8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 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 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 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7	-	1,688.4	1	844.2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상9	-	4,236.3	1	706.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 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0, 상12(3, 4획지)는 공동개발 권장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 특화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 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 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 용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3)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9,032.4	68필지	319,032.4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업1	-	113,042.8	1	87,705.9	
			2	25,336.9	
업2	-	28,855.6	1	2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6	-	5,252.3	3	2,878.4	
			4	3,179.4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2	1,108.3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업17	-	3,182.5	1	784.6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
			2	792.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793.4	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1) 교육시설(변경)

가) 유치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271.5	2필지	3,271.5	
기정	유1	－	1,345.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1,345.5	
기정	유9	－	1,926.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9	1,926.0	

나) 초등학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계		15,076.0	1필지	15,076.0	
변경			19,748.0	1필지	19,748.0	
기정	초1	－	15,076.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5,076.0	
변경	초1	－	19,748.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9,748.0	

다) 고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계		21,110.5	1필지	21,110.5	
기정	고1	－	21,110.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21,110.5	

2)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²)	
기정	계		42,646.1	2필지	42,646.1	
기정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	20,249.3	
기정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	22,396.8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3	-	2,000.6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4)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9	2,317.8	

5)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케이블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계단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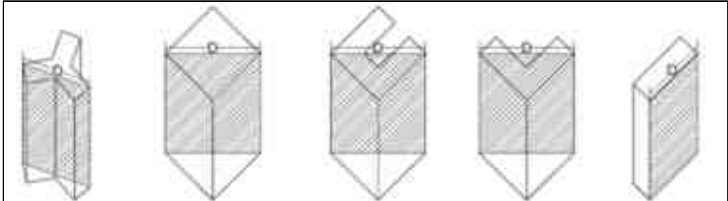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처리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주 거 지역)	B1~B 6, B8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단, B1-1-4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용적률	
		높 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포인트주거동 배치”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6항’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1항’의 지침을 따른다. • “차경축”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 (이하'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 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 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 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결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2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교통체계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 워크	•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필지 번호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기정			553,222.5	9,895					
	변경			548,550.5	9,803					
A-1	기정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 (최고층수)
B-1	기정	1	60㎡~85㎡이하	15,370.1	302	112	22	40	220	임대
		2	60㎡~85㎡이하	28,207.0	55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변경	1	60㎡~85㎡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B-2	기정	1	60㎡~85㎡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B-3	기정	1	60㎡~85㎡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B-4	기정	1	60㎡~85㎡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기정	1	60㎡~85㎡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B-6	기정	1	60㎡~85㎡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7	기정	1	60㎡~85㎡이하	44,405.4	873	112	22	40	220	임대
B-8	기정	1	60㎡~85㎡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 거지역)	근생 1~4, 근생9	용 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 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 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 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 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해당블록	• 근생 1~8	• 근생 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일반 상업 지역)	상1~1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해당블록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상1~4, 상7~12	• 상5~6
			80% 이하	• 80% 이하
			700% 이하	• 700%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화상업 시설 (근린상 업 지역)	특상1~ 특상7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일반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 4~5 업16~2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 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 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 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업무시설
		기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공공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1~2, 업4-2, 업5, 업13, 업15- 1~3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 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 함. 단, 도매시장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공공업무시설
		기타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 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상1~ 상12 업1~ 업24 특상1~ 특상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형태 및 외관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유1, 9	용도	허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기타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학교 지정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녹 지지역) 변경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녹 지지역)	초1 고1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유치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유1, 9 / 초1, 고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녹 지지역) 변경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자연 녹지 지역)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2)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 지역)	문2~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 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 이하)

3)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6~7 (일반상업지역)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18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1~4 (준주거지역)	• 주 13~15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 25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4)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 지지역)	주유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 기타시설용지

가)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 펌프장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오1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나) 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 시설 (자연녹 지지역)	전기1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구분	조성기준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구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 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